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상해·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7. 18. 2011고합4,13(병합),38(병합)]

【전문】

【피고인】피고인1외5인

【검사】정영서

【변 호 인】법무법인 해마루 외 4인

【주문】

]

피고인 1을 판시 상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은 무죄.

[이유]

1

[이유]

1

【이유】

1

【이유】

[이유]

1

[이유]

1

[이유]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